

의안번호	
의 퇴 인	민병덕의원
회 답 일	2025.9.30.
추 계 번 호	25D5305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는 손자녀를 대부지원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억 8,300만원, 2031년 16억 8,100만원 등 5년간 총 79억 200만원(연평균 15억 8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손자녀 대부지원 (안 제18조제1항제3호)	1,483	1,530	1,579	1,629	1,681	7,902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(대부)	대부지원의 대상에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손자녀를 추가(제1항제3호)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8조(대부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부대상으로 추가되는 손자녀 인원에 대부 지원율, 대부단가, 이차보전율(이차보전만 해당)을 적용하여 추계함
- 안 제18조제1항제3호¹⁾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손자녀를 대부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 대부 지원 추가 손자녀 인원은 현행법 제14조의5²⁾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받는 손자녀와 동일하다고 가정함
 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최근 5년(2020~2024년)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인원³⁾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가율
손자녀	16,976	17,819	18,244	18,896	19,239	3.18%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2024년 기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손자녀(19,239명)에 연평균증가율(3.18%)을 적용하여, 개정안에 따른 대부지원 추가 손자녀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
-
- 1) 안 제18조(대부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(長期低利)로 대부를 한다.
1. · 2. (현행과 같음)
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2) 제14조의5(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3)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현황(자녀, 손자녀)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자녀	2,125	2,173	2,168	2,156	2,130
손자녀	16,976	17,819	18,244	18,896	19,239
합계	19,101	19,992	20,412	21,052	21,369

[표 3] 대부지원 추가 손자녀 인원 추정: 2024년,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4	2027	2028	2029	2030	2031
손자녀	19,239	21,132	21,804	22,497	23,211	23,949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본 추계에서 대부지원(직접용자, 위탁대부) 지원율, 단가, 이차보전율(위탁대부)은 최근 5년(2020~2024년) 평균치⁴⁾를 적용함
-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대부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대부지원 추가 손자녀 인원예 대부지원율, 대부단가, 이차보전율(이차보전만 해당)을 적용하여 추정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받는 손자녀를 대부지원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억 8,300만원, 2031년 16억 8,100만원 등 5년간 총 79억 200만원(연평균 15억 8,000만원)으로 추계됨

4) 최근 5년 독립유공자 대부지원 인원·지원율·단가 및 이차보전율 추이

구분	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대상자(명)		8,351	8,558	8,761	8,859	8,964	8,698
직접 용자	인원(명)	149	85	104	101	90	105
	지원율(%)	1.78	0.99	1.19	1.14	1.00	1.21
	단가(백만원)	3.6	8.2	5.5	4.5	4.9	5.3
위탁 대부	인원(명)	523	359	378	434	374	413
	지원율(%)	6.26	4.19	4.31	4.90	4.17	4.75
	단가(백만원)	6.04	9.27	8.25	7.01	6.63	7.4
	이차보전율(%)	0.49	0.41	1.48	3.27	2.98	1.72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대부지원 손자녀 인원		21,132	21,804	22,497	23,211	23,949	—
융 자 금	직접대부 지원율	1.21%	1.21%	1.21%	1.21%	1.21%	—
	직접대부 단가	5.3	5.3	5.3	5.3	5.3	—
	소계	1,355	1,398	1,443	1,489	1,536	7,221
위 탁 대 부	위탁대부 지원율	4.75%	4.75%	4.75%	4.75%	4.75%	—
	위탁대부 단가	7.4	7.4	7.4	7.4	7.4	—
	이차보전율	1.72%	1.72%	1.72%	1.72%	1.72%	—
	소계	128	132	136	140	145	681
합계		1,483	1,530	1,579	1,629	1,681	7,902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, 대부지원율, 대부단가, 이차보전율 등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